

 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 3. 29(수)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6. 3. 28	매 수 총 6매
	담당 과학기술진흥과	과 장	한형호 031) 436-8612
		사무관	김상희 031) 436-861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金雨植)는 3. 31 (금) 오후 2시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개정안은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엔지니어링 기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폭넓게 관계기관과 관련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WTO/DDA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온바 있으며, 지난해 9.2(금) 경제정책조정회의(위원장:경제부총리)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도 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고도지식기반 서비스인 엔지니어링서비스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고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추진 체계정비
-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이다.
- 동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개정 취지 및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유관부처 및 관계전문가의 패넬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과 같다.

< 붙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문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김상희 사무관 (031-436-8612)

<붙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다.
- 나.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된 엔지니어링활동분야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와 ‘발주청’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
- 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본계획의 수립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범정부적 정책조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를 과학기술부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엔지니어링정책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역할을 부여토록 함(안 제8조)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사업자 및 기술인력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동연구,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2조·제13조)

바.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의 지정 및 진흥단지의 지정·조성을 통하여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의 지원방안 마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기술자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기회 확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며, 정보체계를 통해 유지·관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의 소지를 없앴(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아.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엔지니어링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 제24조 · 제57조)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낙찰자결정방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엔지니어링관련 계약제도를 정립코자 함(안 제26조 · 제27조)

차.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함(안 제30조 · 제31조 · 제35조)

카.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의 실시 및 비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을 지원함(안 제36조 · 제37조)

파.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인정기준,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의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신기술의 도입발판을 마련함(안 제38조 내지 제41조)